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지방이양사업 등 제도변화를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조정
(안 별표 제16호, 제32호, 제38호, 제39호, 제43호, 제47호, 제69호, 제70호)

- 1) 지방이양사업을 삭제하고,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조정함

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대상 사업 신설 (안 별표 제97호)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4대 협의체 의견수렴 완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부담비율(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연번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자치구	도	시·군
1	119구조장비 확충	100	0	100	0
2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30	70	30	70
3	재해 위험지역 정비	50	50	50	50
4	방조제 개·보수	70	30	70	30
5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50	50	50	50
6	토양개량사업	50	50	50	50
7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50	50	50	50
8	연근해어선 감척(減隻)	100	0	100	0
9	농기계임대사업	50	50	50	50
10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공공시설)	50	50	50	50
1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50	50	50	50
12	농산물유통 개선	50	50	50	50
13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100	0	0	100
14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100	0	0	100
15	폐기물 처리시설	70	30	30	70
16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도서지역 식수원개발)	100	0	30	70
17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70	30	30	70
18	하수처리장 확충	70	30	50	50
19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70	30	50	50
20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70	30	30	70
2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30	70	30	70
22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100	0	100	0
23	경전철 건설	100	0	0	0
24	해양 및 수자원 관리				
	가. 연안정비	30	70	30	70
	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50	50	50	50
25	해양보호구역 관리	50	50	50	50
26	도시철도 건설	100	0	0	0

27	산림병해충 방제	30	70	30	70
28	산불방지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30	70	30	70
29	조림사업(造林事業)	30	70	30	70
30	숲 가꾸기	30	70	30	70
31	사방사업	70	30	70	30
32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삭제>	70	30	70	30
33	임산물(林産物) 유통구조 개선	50	50	50	50
34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50	50	50	50
35	임도시설	50	50	50	50
36	산림서비스 증진	70	30	70	30
37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100	0	50	50
38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시설지원)	<u>100</u>	<u>0</u>	<u>0</u>	<u>100</u>
	가.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사업 <삭제>	100	0	0	100
	나. 그 밖의 경우 <삭제>	100	0	50	50
39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삭제>				
	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운영	30	70	30	70
	나. 그 밖의 경우	50	50	50	50
40	관광자원 개발	50	50	50	50
41	전국체육대회 운영	70	30	70	30
42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한다) 지원	70	30	70	30
43	체육진흥시설 지원 <삭제>	50	50	50	50
44	전국체전시설 지원	70	30	70	30
45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50	50	50	50
46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00	0	50	50
47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100	0	100	0
	<u>가. 설립주체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인 경우</u>	<u>100</u>	<u>0</u>	<u>100</u>	<u>0</u>
	<u>나. 설립주체가 시·군 및 자치구인 경우</u>	<u>0</u>	<u>100</u>	<u>0</u>	<u>100</u>
48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소아환자 관리	50	50	50	50
49	한센환자 보호시설 운영	100	0	100	0
50	한센양로자 지원	100	0	100	0
51	방과 후 돌봄서비스	50	50	50	50

5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가.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 시·군·자치구의 사회보장 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 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 시·군·자치구의 사회보장 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 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다. 그 밖의 경우	50	50	50	50
5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가.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 시·군·자치구의 사회보장 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 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 시·군·자치구의 사회보장 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 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다. 그 밖의 경우	50	50	50	50
5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100	0	70 80	시30 군20
55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100	0	70	30
56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70	30	70	30
57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 시·군·자치구의 사회보장 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 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 시·군·자치구의 사회보장 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 가 85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의 경우	30 이상 50	70 이하 50	30 이상 50	70 이하 50
58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00	0	50	50
59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100	0	70	30
60	어린이집 기능 보강	50	50	50	50
61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 로	100	0	50	50
62	긴급복지지원	50	50	50	50
63	보육돌봄서비스, 육아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 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가.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 시·군·자치구의 사회보장 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자주도 가 80 미만인 경우 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 시·군·자치구의 사회보장 비 지수가 20 미만이고 재정자주도 가 85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의 경우	70 30 이상 50	30 70 이하 50	70 30 이상 50	30 70 이하 50
64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30	70	30	70
65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	50	50	50
66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100	0	50	50
67	사회적기업 육성	70	30	70	30
68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0	100	0	100
69	위험도로구조 개선 <삭제>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에 차방비 전액부담			
70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삭제>	100	0	30	70
71	수산물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30	70	30	70

72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100	0	100	0
73	하수관로 정비	70	30	50	50
74	비점오염저감사업	100	0	30	70
75	빗물저장시설 설치	100	0	30	70
76	정신요양시설 운영	100	0	100	0
77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보호지원	100	0	50	50
78	결핵환자 보호시설 운영	100	0	100	0
79	고도정수처리 시설	100	0	30	70
80	노인 여가시설운영 지원	50	50	30	70
81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100	0	30	70
8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	100	0	100	0
83	모자보건 사업	50	50	50	50
84	산림경영계획	30	70	30	70
85	산림조합특화사업	50	50	50	50
86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50	50	50	50
87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00	0	50	50
88	어선용 기자재 공급	100	0	100	0
89	어촌종합개발	30	70	30	70
90	외국인 투자유치(경상, 자본)	50	50	50	50
91	응급의료체계 구축	100	0	100	0
92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50	50	50	50
93	임산물 수출촉진	50	50	50	50
94	전통사찰 보수 정비	50	50	50	50
95	축산물 검사	70	30	70	30
96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100	0	0	100
97	학대아동보호 쉼터 설치 및 운영	100	0	50	50

※ 비교: 광역시와 광역시 관할 군 간의 부담비율은 도와 군 간의 부담비율을 적용한다.